

## 제3장

#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 및 조사항목 개발 -

제3장



한승훈

## 제1절 서론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에 대한 연구는 2014년 1월에 마련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개선방안의 개선과제에 신규 부가조사 개발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은 2000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청년층 부가조사, 2005년 고령층 부가조사, 2007년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개발하여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매년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사항목 개선과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해왔다.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외에 새로운 부가조사 개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응답자의 응답부담, 조사현장의 조사원의 업무부담 등 예산과 인력상의 제약으로 인해 2007년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개발 이후에는 기존 부가조사의 개선에 그쳤다. 새로운 부가조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황 부가조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개선방안이다.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다 잘 측정하려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의 당위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장하준, 2014).

따라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또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사주체의 선정과 조사항목 개발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조사주체의 선정은 측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항목 개발은 측정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조사주체 선정을 위해서 먼저, 고용통계 측정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통계 측정틀은 노동력 공급측면에서의 노동력의 양, 고용의 질,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그리고 비정규직(non-regular) 근로자, 비전형적(atypical) 근로자 또는 비표준적(non-standard) 근로자로 통칭되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통계 측정틀은 노동력 공급측면에서만 파악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이기 때문이다. 고용통계 측정틀을 검토한 다음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와 정책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를 통해 측정이 필요한 주제들을 파악하고, 잠정적으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조사주체로 선정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잠정적인 주제인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측정하려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이 필요하다.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통계적 측정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과 이와 관련된 국내의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을 검토할 것이다. 평소 활동인구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통계청의 고용통계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조사 역시 현재 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평소 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미취업 기간 동안의 주된 활동에 대한 조사항목은 현재가 아닌 평소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조사항목들은 예외적인 조사항목이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측정하려면 생애주기 관점과 평소 활동인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조사항목 개발에 생애주기 관점, 평소 활동인구 개념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조사실시상의 어려움이 있다. 먼저 생애주기 관점 도입에 따른 조사 실시상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에 걸친 이행에는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취업자와 실업자 간 이행, 취업자의 경우는 종사상 지위 간 이행과 근로형태 간



이행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그 주변영역인 교육·훈련, 육아·가족돌봄 간 이행, 생애 주된 직장(일)에서 은퇴 이후의 재취업과 같은 점진적인 은퇴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영구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실질적인 은퇴로의 이행이 있다. 이러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은 다른 이행형태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측정이 어렵다.

평소 활동인구 개념의 도입에 따른 조사실시상의 어려움은 응답자의 응답부담 증가와 측정오차의 증가이다. 현재 활동인구는 ‘지난 1주 또는 지난 4주’와 같은 단기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평소 활동인구는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해’와 같이 장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장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해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부담이 증가하고, 기억에 대한 회상오차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한다.

생애주기 관점과 평소 활동인구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조사실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측정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조사항목의 설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표본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 조사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활동상태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 조사항목을 기본 조사항목으로 개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노동시장과 그 주변영역인 학교(교육·훈련) 또는 가정(육아·가족돌봄)과의 이행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근로연령인구의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국내외의 조사항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사조사의 조사항목을 설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 제2절 조사주제의 선정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고용통계 측정틀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용통계 측정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에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빠져 있는 조사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통계 측정틀을 먼저 검토한 이유는 UN의 공식통계 기본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고용통계 측정틀을 논의한

다음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정책수립 및 정책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와 정책관련부서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의 고용정책과 정책관련 부서의 수요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 1. 고용통계 측정틀

### 가. 작성목적과 범위

고용통계 측정틀의 작성 목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즉, 고용통계 측정틀에서 다루고 있는 측정영역과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주제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조사주제를 탐색하는 것이 고용통계 측정틀 작성의 목적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측정은 크게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통계의 조사대상은 노동공급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구나 가구원이고, 노동수요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을 수요하는 사업체이다.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사업체 대상의 통계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에서 주로 가구(원)이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고용통계 측정틀 작성의 목적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 탐색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동공급측면에서의 고용통계 측정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측면에서의 고용통계 측정틀은 고용의 양과 질, 이행(이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의 양과 질,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을 고용통계 측정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고용의 질 측정틀의 일자리의 안정성 측정영역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들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들은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인 근로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현재 또는 평소에 노동시장에 공급한 노동력의 양과 노동시장에 공급 가능한 잠재적인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의 양 측정들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의 결의안들을 주로 검토하였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즉,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인 ICLS 결의안은 제13차 ICLS 결의안(1982년), 제16차 ICLS 결의안(1998년), 제19차 결의안(2013년)이 있다. 제13차 결의안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ment) 통계, 제16차 결의안은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부적절한 고용상태(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 측정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19차 결의안은 근로(work)와 취업자 그리고 노동력 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 통계에 대한 결의안이다. 국제노동기구의 세 개의 ICLS 결의안의 내용은 근로연령인구의 현재와 평소 활동상태 측정방법,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고용의 양에 대한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 그리고 일(근로)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에 대한 측정은 현재 활동상태와 평소 활동상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활동상태는 지난 1주와 지난 4주간의 단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측정하고, 평소 활동상태는 지난 1년간의 장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활동상태를 측정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연령인구의 현재 활동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일부 조사항목을 평소 개념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attachment)가 높은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전통적인 실업지표 외에 노동력 저활용지표 작성기준이 마련되었다.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는 구직희망 여부, 구직 여부 그리고 근로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노동력은 구직의사와 구직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 노동력에는 다음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된다.

- 현재 일을 시작할 수 없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설정한 기간 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구직자(unavailable jobseekers)
- 취업을 희망하고 현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비구직자(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통계청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고용보조지표라는 명칭으로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일(근로)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통계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범위와 관련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생산범위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인구가 취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가구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는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구의 자가소비를 위한 서비스를 경제활동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을 경제활동에 포함할 경우 근로연령인구에 속하는 거의 모든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근로연령인구를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할 수 없어 노동통계 작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Hussmanns). 그러나 가사, 육아, 가족돌봄과 같은 무급 가사서비스를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일반 생산범위(general production boundary) 개념을 통해 국민계정체계의 생산계정 작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의 위성계정을 통해 무급가사서비스를 파악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ILO의 ICLS 결의안도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급가사서비스를 별도로 측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 내의 경제활동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근로통계(work statistics) 체계를 제시해 무급가사 서비스를 일(근로)에 포함하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유급 근로와 무급가사서비스 간의 대체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근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상태, 지난 주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유, 지난 4주간 비구직 사유 그리고 직장(일)을 그만 둔 사유에 육아, 가사, 가족 관련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의 근로의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주제가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의 양 측정과 관련해서 여성 이외에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관련된 측정틀이 중요해 지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관련된 측정틀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진입경로에 대한 측정이 포함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경로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진입 전”, “진입 중”, “진입 완료”로 나누는 방법이다 (ILO, 2012). 두 번째 방법은 청년층이 학교와 노동시장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가를 기준으로 청년층의 진입경로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청년층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교육·훈련 중인 미취업자
- 교육·훈련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층
-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취업자
-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층인 니트족(NEET)에 대한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니트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니트족 개념에 대한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니트족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의 경우 학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족의 정의에 있어서, 청년층의 연령기준, 정규교육 외 훈련 포함 여부 및 비정규교육과 비정규훈련의 포함 여부, 실업자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혼인상태 등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니트족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OECD는 니트족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면서도, 보고서에 따라 국제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훈련을 제외하고 ‘취업자가 아니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한승훈, 2013).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 지표에서 니트족을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위원회의 고용위원회에서 니트족을 ‘일자리가 없고,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으로 정의해 교육·훈련에 정규 교육과 훈련 외에 비정규 교육과 훈련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2). 니트족 통계는 기존의 청년 실업률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비해 청년층 노동시장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년층 인구 중 미취업자이면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의 백분율로 나타난 니트족 비율은 구직단념자와 장애와 가사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률보다 잠재적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를 보다 넓게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니트족 통계는 교육 또는 훈련 중이어서 현재 일을 할 수 없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에 비해 잠재적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니트족 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고용의 양 측정들과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고용의 양 측정들 중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제는 근로연령인구의 현재 활동상태와 잠재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노동력의 양 측정 중 노동력 저활용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조사주제는 근로연령인구의 평소 활동상태, 잠재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노동력의



양 측정 중에서는 무급가사서비스 측정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통계와 청년 니트족 통계이다.

## 다.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틀

ILO의 제16차 ICLS 결의안에는 부적절한 고용상황(*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적절한 고용상태와 관련해서는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과 노동력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저임금근로자가 언급되고 있다.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은 근로자가 가지는 있는 기술수준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저임금근로자는 근로자가 공급하는 노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작성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숙련 관련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근로자가 노동력 저활용에 포함되기도 한다(ILO, 2008). ILO에서 고용의 질과 관련된 논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지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9년에 양질의 일자리 의제가 나온 이후, 2008년 제18차 ICLS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측정틀이 채택됐다. ILO 외의 대표적인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틀은 유럽연합(EU)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지표이다.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는 고용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 외에도,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의 양과 법적·제도적 맥락에 대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지표에서 고용의 질에 대한 지표들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OECD의 삶의 질 측정틀(*framework for measuring people's well-being*)에 포함돼 있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는 측정영역이 대부분 중복되면서도 하나의 지표에만 포함돼 있는 측정영역이 있다. 두 지표 중에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측정영역은 임금, 사회보장, 근로시간, 일·가정의 양립, 일자리의 안정성, 안전한 근무환경, 교육과 훈련, 사회적 대화, 직장 내 관계와 근로동기이다.

임금 측정영역에 포함되는 고용의 질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포함된다.

- 빈곤근로자 비율
- 저임금근로자 비율
-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
- 자영업자의 임금분포



빈곤근로자 비율(working poverty rate)은 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인구 중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율이다. 개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거주하면 근로빈곤층에 해당된다. 이 지표는 개인 단위의 소득과 가구단위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조사보다는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항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항목 추가없이 지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의 조사 기준기간이 각각 1주일과 1개월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개념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최저임금의 적절성과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영업자의 임금분포는 자영업자가 상당히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수입을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어렵다. 유럽연합의 경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임금도 노동력조사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소득은 조사하고 있지 않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고용의 질 지표로는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지출, 임금보조에 대한 공공지출 등이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수혜율을 조사하고 있고, 공공지출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사항목 개선이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의 질 지표는 다음과 같은 측정영역들이 포함된다.

- 근로시간의 길이
- 근로의 시기
- 근로시간의 조정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

근로시간의 길이는 과소한 근로시간과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지표가 있다. 과소한 근로시간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고, 고용의 양 측정틀의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실제 또는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정의된다.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인 주당 48시간은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시간에 대한 관례(Hours of Work(Industry) Convention, 1919)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근로시간 측정에 대한 제18차 ICLS 결의안(2008)에서도

참고됐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제와 주당 최대 12시간의 초과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을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지표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OECD의 삶의 질 측정틀의 일과 생활의 균형 영역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기준을 51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 지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표이다.

근로의 시기와 관련된 지표에는 하루의 근로시기인 저녁과 야간 근로자 비율, 1주간의 근로시기인 주말근로자 비율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 비율 등이 있다. 근로시간의 조정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측정과 관련된다. 근로시간 결정권이 임금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의 길이, 근로시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근로시간의 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근로시간 결정권은 또한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임금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삶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의 2005년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에는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순서, 업무처리방법, 업무처리속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평소 근로시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소정 또는 평소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의 길이를 조사하고,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근로시간 측정틀 중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지표는 근로의 시기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에 대한 조사항목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으로 조사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고용의 질은 주당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연간 근로시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으로 측정된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유급연차휴가일수, 병가일수 등의 근로일수 및 하루 동안의 근로시간에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에는 유급연차휴가와 병가의 수혜 비율 그리고 유급연차휴가 및 병가의 사용 가능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고용의 질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유급휴일·휴가(연차, 유급출산휴가 등) 수혜비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없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회상오차, 대리응답 등과 같은 가구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용의 질 지표는 근로시간에 대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의 질 지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지표로는 의무교육 연령 미만의 자녀유무별 20-49세 연령계층의 성별 비율,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가족휴가 수혜를 받는 부모의 비율,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취업자 비율, 자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업자인 부모가 한 명 이상인 가구의 비율 등이



있다. 근로시간과 일·가정 양립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하는데 사용한 시간인 통근시간과 무급가사서비스에 사용한 시간을 포함한 포괄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삶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의 2005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포괄적인 근로시간(composite working time)을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였다. 포괄적인 근로시간에는 주업과 부업의 근로시간 외에도 통근시간과 가족돌봄이나 가사와 같은 무급근로시간이 포함된다. 포괄적인 근로시간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무급근로시간을 포함할 경우 남성 전일제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시간제근로로 확보된 시간을 대부분 무급근로를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우 고용의 양 측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가정 양립에 대해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고용의 질 지표에는 다음과 같이 지표들이 포함된다.

- 기간제근로자 비율
- 근속기간
- 파견근로자 비율
- 공식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임금근로자 비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
-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비율
- 불안정한 취업자(precarius employment) 비율
- 비공식취업자(informal employment) 비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고용의 질 지표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근로형태별로 임금근로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공식 취업자에 대한 지표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 비공식취업자는 일자리가 공식부문이나 비공식부문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호 또는 근로복지수혜가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비공식취업자에는 다음과 같은 취업자가 포함된다.

- 비공식부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동업자, 고용주
- 무급가족종사자
- 가구의 자가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근로자
- 비공식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공식부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노동법, 소득세, 사회보장, 근로복지혜택(해고의 사전통지,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병가 등) 수혜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는 비공식취업자로 간주된다.

비임금근로자는 이질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의 질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기업자가적 지위 즉 업무를 구조화하고, 종업원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재정의 독립성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가지는데,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성이 약하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고객이 여러 명인 자영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 그 이유는 이들의 수입이 1명의 고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지표는 산업재해 발생율,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업자 비율,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 근로감독관수 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에서 산업재해보험가입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지표들은 통계조사보다는 행정자료를 자료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훈련관련 고용의 질 지표에는 지난 4주 또는 지난 1년간 직장교육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과 근로자의 기술숙련 정도와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숙련 간의 불일치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된다. 기술숙련 불일치는 근로자의 기술숙련 정도가 자신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숙련 정도와 비교하여 자격미달 또는 자격초과 여부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의 증가로 인해 자격초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 영역에 포함되는 고용의 질 지표는 노동조합 가입률, 사용자 단체에 가입한 기업체수, 단체교섭 적용률,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해 일하지 않은 일수 등이 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률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자료원으로 행정자료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고용의 질 지표 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 검토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 관계와 근로동기가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고려되는 이유는 직장 내 관계와 근로동기가 취업자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관계는 일자리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근로동기는 보다 개인적인 특성들이다. 직장 내 관계에 대한 하위 측정영역은 임금근로자와 상사 간의 의소통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상호 간의



대화와 관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동기의 경우 유용한 일을 하고 있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과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에 대한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다.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EU의 고용의 질 지표 외에 OECD의 삶의 질 측정틀 (framework for measuring people's well-being)에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OECD의 삶의 질 측정 결과는 2년 주기로 'How's Life?'란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OECD의 근로에서의 삶의 질 측정틀은 'How's Life?'의 측정틀 중 근로와 비근로생활의 균형에 대한 측정영역으로 주로 근로에 보낸 시간과 개인적 삶과 가족생활에 보낼 수 있는 시간 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근로는 시간제약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의 2013년 "How's life?"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점을 둔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OECD의 확대된 근로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기본전제는 사람들의 근로에서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간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육체적, 심리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근로에서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OECD의 근로에서의 삶의 질 지표는 유럽재단의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na Working Condition Survey)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일자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일자리 특성은 업무 압박감, 감정노동, 육체적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근로자가 이러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업무 자율성, 학습 기회, 업무의 명확성, 관리, 동료의 도움이 포함된다.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OECD가 감정노동을 근로에서의 삶의 질 지표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유럽근로환경조사는 감정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화난 고객을 다루는지 여부
- 일자리가 개인적 가치와 충돌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일자리가 개인적 감정을 숨길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ILO, EU 그리고 OECD의 고용의 질 측정틀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임금근로자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질을 조사하는 데에는 방법론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실제 조사실시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무급가족종사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적 측정방법과 관련 지표 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의 양 측정에서와 같이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통계가 고용의 질에서도 빠져있다. 이외에 고용의 질 측정틀과 비교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거나, 기존 조사항목을 이용해 새로운 조사주제나 지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저임금근로자 비율
- 근로시간의 길이·시기·조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
- 통근시간과 무급가사서비스시간
- 업무처리순서, 업무처리방법, 업무처리속도 등의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
- 비공식취업자
- 감정근로

## 라.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형태는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의 단계별로 노동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과 선호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재단의 2010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유무, 육아시기에 있는 여성, 고령층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Vermeulen, 2013). 그리고 시간제일자리인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금감소 가능성이나 사회적 안정성의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UNECE, 2012).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1980년에 이미 1년 내내, 하루 8시간 정도를 일하는 상용직의 전일제일자리에서 일년 중 일부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이후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이전과 다른 근로형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근로형태들에 대한 측정은 상용직의 전일제 고용형태 측정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다양한 근로형태는 필연적으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측정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근로형태와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의 원인으로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양립에 대한 근로연령인구의 선호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의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개별 근로연령인구가 처해있는 상황에 달라진다.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의 고용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생활과 비근로생활 간의 양립에 대한 근로연령인구의 선호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은 직장(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 따라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중 무엇이 '좋은' 이행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좋은 이행은 상용직,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로의 이행과 같은 객관적인 일자리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슈미트(Schmid)가 제안한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 이론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중요한 사건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체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청년층이 6정규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
- 노동시장 진입 후 활동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간의 이행
- 활동상태 간 이행은 그 사유가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인 경우인 가구와 노동시장 간 이행
- 노동시장 내에서의 근로형태 즉 전일제일자리와 시간제일자리 간 이행을 포함하는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간 이행, 종사상 지위 즉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이행 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이행
- 노동시장과 은퇴 간 이행

5단계로 단순화된 근로자의 생애주기의 실제 모습은 보다 복잡하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거나, 학업과 취업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니트족(NEET) 상태에 있기도 한다. 그리고 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원래의 근로형태를 그대로 유지 또는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다음에 육아를 병행하거나, 일자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도 한다.

이행노동시장의 개인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은 노동시장 바깥에 위치한 이행과 인생영역을 포함하고,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의 직업적 이동 외에 다른 이동형태의 존재에도 주목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들이 최근의 노동시장의 역동성과 혼란스러운 새로운 실재와 생애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이행노동시장 관점을

이용하고 있다(Reci와 Bruijin, 2006).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의 주요한 영역 간 이행을 하는 동안 임금손실과 같은 위험들을 관리해주는 사회적 위험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관리제도를 통해 근로연령인구가 ‘좋은’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측정의 관점에서 이행노동시장이론은 통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생애주기의 중요한 단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은퇴와 같은 고용의 양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같은 고용의 질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에서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의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 마. 시사점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노동 공급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측정할 때,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형태와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측정영역들과 각 측정영역별 하위 측정지표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의 양은 현재 또는 평소에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과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 각각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고용의 질의 경우 임금근로자 외에 비임금근로자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비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에 대한 측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은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근로형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근로형태가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계적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근로형태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유형 중 통계적 측정을 해야 하는 이행형태에 대해 이행노동시장이론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의 연구성과와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통계적 측정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용통계 측정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시사점은 고용통계 측정틀의 네 가지 측정영역들이 다른 측정영역들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측정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이 다른 측정영역에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통계적으로 잘 측정하려면, 통계생산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측정영역들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자료이용자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해외사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미국 현재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조사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유럽연합은 1999년 이후 매년 하나의 주제에 대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 근로에서 은퇴로의 이행
- 일과 가정의 양립
- 근무형태와 근로시간 일정
-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상황
- 직장 내 사고와 근로관련 건강
- 장애인 고용
- 평생학습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근무형태와 근로시간 일정에 대한 신규 부가조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가조사는 아동보육, 가족돌봄, 근로시간 조정 등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근무형태와 근로시간 일정 부가조사는 업무처리방법, 교대근무제 등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나. 미국 현재인구조사 부가조사

미국 현재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고용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참여, 흡연, 식품안전 등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센서스국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통계국, 미국교육협회, 국립암센터와 같은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도 부가조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재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 중 고용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고근로자
- 근속기간과 직업이동
- 임시근로자(contingent workers)
- 실업보험

해고근로자 부가조사에서는 공장폐쇄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 대해 조사한다. 근속기간과 직업이동 부가조사에서는 현재 일자리의 고용주와 현재 직업에서의 근속기간을 측정하고 있다.

## 다. 시사점

유럽연합 노동력조사 부가조사와 미국 현재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 해고근로자, 직업이동 부가조사와 같은 생애주기 관점의 장기 조사기준기간에 대한 조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3. 정부의 고용정책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가. 정부의 고용정책

여기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관계부처 합동, 2013)’, ‘경제혁신 3개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 그리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기획재정부, 2014)’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용관련 과제는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 그리고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고용의 양과 관련된 국정과제에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가 포함된다.

- 청년 일자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고용의 질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근로자 생활보장
- 장시간 근로 개선
- 임신·출산·자녀양육 여건 조성
-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지원 및 발굴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 최저임금에 대한 과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 중·장년층 맞춤형 훈련과 정년 60세 연장
- 일·학습 병행 지원
- 생애주기별 숙련향상 지원 및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 생애주기별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국정과제 중 청년, 여성,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과제들은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과제이기도 한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관계부처합동, 2014)’은 국정과제에 비해 노동시장 정책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고용의 양과 관련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 개와 여성 일자리 1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창업 펀드 확충
- 선취업·후진학 정착
-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과제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 시간제 보육반 확대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방안

고용의 질에 대한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대상 확대
- 실업급여 체계 개선
-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확대
-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및 육성

실행과제 중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선취업 후진학자에 대한 계속 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전환 및 육성에 대한 실행과제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실행과제이기도 하다.

이외에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에는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기획재정부, 2014)’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주기 관점을 담고 있어,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 청년의 자격수준과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수준 간의 불일치 해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선취업·후진학
- 일과 학업의 병행
- 장기근속 및 경력유지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 → 영유아 → 초·중·고)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표체계를 통계청이 수집·관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표들을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지표를 구축하였다.

## 나. 시사점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의 질에 대한 내용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다. 고용의



양과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관련된 정책은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기근속 및 경력유지에 대한 내용이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 관점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해서 네 가지 차원의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교와 노동시장 하나에만 속하는 청년층,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니트족 그리고 학교와 노동시장 모두에 속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으로 나누어 측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남아있는 근로연령인구에서 실업자를 분류한 뒤 나머지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외에도 니트족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고용정책의 경우 통계청에서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지표를 구축하였지만,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통계조사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일·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일부만을 충족할 뿐이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 4. 정책관련부서 수요조사 결과

통계청에서는 2014년 4월에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정책에 필요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을 위해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동과정 파악’과 ‘장애인 기업 사업체의 고용현황 및 전국 장애인기업 분포’에 대한 신규 부가조사 개발 요청이 있었다.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 목적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미취업자의 취업 전과 후의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가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다.

## 5. 조사주제의 선정

### 가. 신규 통계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주제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이 있다.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은 전국 수준에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시군 수준에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고용의 양 측정은 현재 또는 평소에 가구(원)이 노동시장에 공급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과 가구(원)이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또는 평소에 노동시장에 공급된 고용의 양은 현재 활동인구와 평소 활동인구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현재 활동인구는 지난 1주 또는 지난 4주와 같이 단기 조사 기준기간 동안의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조사하고, 평소 활동인구는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해와 같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통계청에서는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은 현재 활동인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조사항목에서 평소 활동인구 개념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가구(원)이 장래에 공급가능한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자 중 시간관련 불안전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와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할 수 있는 비구직자가 포함된 노동력 저활용에 대한 지표인 고용보조지표를 2014년 11월부터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의 노동력 저활용지표 측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노동력 저활용지표 외에 기존의 경제활동인구 측정방법을 유지하면서 근로통계체계(system of work statistics)를 만들어 무급가사서비스를 근로(일)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무급가사서비스의 주 담당자인 여성의 잠재 노동력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전체 주제 중 일부이다. 여성과 더불어 잠재 노동력과 관련된 중요한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노동시장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니트족과 학교와 노동시장에 모두에 속하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표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고용통계 측정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에 대한 해외사례, 정부의 고용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양 측정에 대해서는 평소 활동인구에 대한 측정, 개인(특히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 그리고 청년 니트족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측정 또는 지표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소 개념의 측정과 여성 및 청년층에 대한 측정은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다. 특히 일·



가정 양립은 고용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의 질과 관련된 측정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추가 조사항목을 통해 유연근무제, 맞벌이 가구, 직장이동과 관계없이 현재 직업에서 일한 기간과 같은 고용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 훈련,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고용의 질은 월평균 임금과 임금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혜택 수혜율, 교육·훈련경험 여부, 노동조합 가입률,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 유연근무제, 맞벌이 가구, 현재 직업에서 일한 기간 등이다.

고용의 질 측정틀, 해외사례, 정부정책 등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감정근로, 근로수행방법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결정권 여부와 정도, 유급근로시간과 통근시간 그리고 무급가사서비스시간을 포함한 통합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비공식취업자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 등에 대한 측정이나 새로운 지표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사회보험과 평소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조사항목을 일부 조사하고 있다. 고용의 질 측정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임금근로자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무급가족종사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고객이 1명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고용의 질 지표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의 유연근무제 조사항목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결정권 여부와 정도에 대한 조사항목을 같이 구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없는 재량근무제를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결정권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유연근무제 유형 중에서 재량근무제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과 연간 근로시간이 근로자마다 동일하지 않아, 1주일을 단위로 조사하는 근로시간을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근로시간을 보다 정확히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야간근로, 주말근로 그리고 교대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기에 대한 측정, 기술관련 불일치 및 직장 내 근로관계와 근로동기 등에 대한 지표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측정하고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과 관련된 조사 또는

조사항목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고령층 부가조사 그리고 지역별고용 조사의 경력단절여성과 직장이동과 상관없이 현재의 직업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조사 항목이다. 청년층 부가조사의 조사주제는 ‘최종학교 졸업·중퇴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이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는 아니지만, 최종학교 졸업·중퇴 시기와 첫 일자리 취업시기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청년층의 학교와 노동 시장 간 이행에 대한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년층 부가조사는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보다 청년층의 잠재적인 노동공급량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니트족 지표와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중 하나인 일·학업 병행에 대한 지표 작성의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의 근속기간과 그 직장을 그만둔 시기 등을 조사하여 고령층의 노동시장과 은퇴 간 이행에 대한 지표작성을 위한 자료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작성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표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란 보다 상위의 관점에서의 조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행 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생애주기 관점의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측정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통계 측정틀 논의에서 서술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측정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근로형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는 고용주와 사용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접고용형태와 간접고용형태로 나누는 근로형태 측정틀에서 분류되지 않는 근로형태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간접고용형태이지만, 형식적으로 직접고용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간접고용형태와 마찬가지로 원청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간접고용이지만, 소속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직접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측정과 관련해서 통계청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조사현장에서의 조사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조사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힘들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 이유는 근로형태가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측정영역별 신규 통계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한 주제는 <표 3-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일·학업 병행, 시간선택제근로자 등은 고용의 양과 질, 이행, 근로형태와 모두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

〈표 3-1〉 노동시장 측정영역별 신규 통계 및 지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

측정영역	신규 통계 및 지표 개발 검토가 필요한 주제
고용의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활동인구</li> <li>- 일·가정의 양립</li> <li>- 청년 니트족과 일·학업 병행 청년층</li> </ul>
고용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의 양립</li> <li>- 일·학업 병행 청년층</li> <li>- 감정근로자</li> <li>- 근로수행방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li> <li>- 근로시간조정에 대한 임금근로자의 자율성</li> <li>- 통합 근로시간(유급 근로시간+통근시간+무급 근로시간)</li> <li>- 저녁·야간, 주말 근로 등 근로시기</li> <li>- 교대근무제</li> <li>- 연간 근로시간을 환산할 수 있는 조사항목</li> <li>- 저임금근로자 비율</li> <li>- 기술관련 불일치</li> <li>- 비공식취업자</li> <li>- 비임금근로자의 상세분류별 고용의 질</li> <li>- 직장 내 근로관계와 근로동기</li> </ul>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니트족과 일·학업 병행 청년층</li> <li>- 일·가정 양립</li> <li>- 활동상태 간 이행</li> <li>- 근로형태 간 이행</li> </ul>
새로운 근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하도급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li> </ul>

## 나. 조사주제의 선정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고용통계 측정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해외사례, 정부의 고용정책, 관련 부처의 수요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측정영역별로 신규 통계 또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들 주제에 대해 향후 조사의 필요성, 조사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시의성 등을 검토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 선정과 신규 통계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실사과인 고용통계과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이란 주제가 고용의 양과 질, 새로운 근로형태 그리고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 측정영역 모두와 관련이 있는 기초통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정영역으로 측정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지난 1년간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으로 파악하면, 근로연령인구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분류된 근로연령인구별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연령인구
- 1년 중 특정 기간에만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연령인구
- 1년 내내 미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신규 부가조사는 지난 1년간 특정 기간에만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행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사목적이다.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경로는 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중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는 사유를 출산·육아, 가족 돌봄, 학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조사할 경우 일·가정 양립과 청년층 니트족이나 일·학업 병행 청년층과 같은 새로운 통계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경험한 일자리들 각각의 근로형태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근로형태들 간 이행에 대한 조사로의 확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목적에 따라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시간관련 불안전취업자 등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인구의 이행에 대한 평소 활동인구 개념의 측정은 지난 1주와 4주간의 단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측정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결과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현재 활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서 측정한 평소 활동인구 간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고용정책들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애주기 관점은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넷째,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제시를 들 수 있다.



## 제3절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측정은 장기 조사기준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평소’ 개념의 측정틀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을 위해 먼저 ILO의 제13차 ICLS 결의안(1982)와 평소 활동인구 측정 매뉴얼(ILO, 1990)을 중심으로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과 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

ILO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에 대한 매뉴얼(Hussmanns et al., 1990)에는 근로연령인구의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네 가지 접근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네 가지 측정방법은 응답자 또는 조사원이 응답자의 주된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법(direct assessment), 연간 취업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었던 주수나 일수를 조사하는 방법(whole-year recall), 월 단위로 연간의 각 월의 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month-by-month recall) 그리고 응답자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법(employer-specific approach)으로 구분된다.

#### 가. 응답자가 자신의 주된 활동상태 결정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주된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상태를 분류하는 방법은 조사원이 응답자와의 면접을 통해 조사원이 응답자의 주된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주된 활동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응답자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 활동상태 이외에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상자 3-1>과 같은 문항구성을 통해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상태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평소’의 개념을 지난 1년이 아니라 ‘지난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 <상자 3-1> 한국노동패널의 평소 활동인구 조사항목

-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        )

### 나. 연간 활동상태에 대한 주수와 일수 조사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연간 취업상태 또는 실업상태에 있었던 주수나 일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의 ‘근로경험조사(Work Experience Survey)와 호주, 스웨덴에서도 사용된 조사방법이다. 미국의 1978년 기준 근로경험조사의 조사항목은 1978년 한 해 동안의 취업상태에 있었던 주수, 구직 주수, 일을 하지 않았던 사유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 <상자 3-2> 미국 근로경험조사의 평소 활동인구 조사항목**
- 1978년에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일한 주수는 몇 주입니까?
  - 1978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이나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었던 주수는 몇 주입니까?
  - 1978년에 일을 하지 않은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1) 질병 또는 장애
    - (2) 가사 또는 가족 돌봄
    - (3) 학업
    - (4)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음
    - (5) 군입대
    - (6) 은퇴
    - (7) 기타



## 다. 월별 활동상태 조사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번째 접근방법은 지난 1년의 조사기준기간을 1개월 단위로 나누어, 각월에 대해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있었던 주수나 일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근로연령인구의 주된 활동상태 분류단위인 주수와 측정단위인 월의 단위가 달라서 이용하기에 복잡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Annual Work Patterns Survey)’에서는 1개월 동안 일을 계속한 월과 일부 주 동안만 일을 한 월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상자 3-3> 캐나다 연간 근로형태조사의 평소 활동상태 조사항목

- 1983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1983년에 모든 월(12개월)에 일을 했습니까?
- 몇 월에 일을 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일을 한 월 내내 일을 했습니까, 일부 주에 대해서만 일을 했습니까?

- 1개월 내내 일한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1개월 중 일부만 일한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1983년에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 구직활동을 한 월은 언제입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소득과 생활환경조사(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에서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소득과 생활환경조사에서는 근로연령인구의 현재 활동상태와 지난 1년간의 활동상태 변동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활동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1년간 각월의 활동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상자 3-4> 유럽연합 소득과 생활환경조사 평소 활동상태 조사항목**

-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중 현재 활동 상태를 가장 잘 기술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전일제 임금근로자
- 2) 시간제 임금근로자
- 3) 전일제 자영업자
- 4) 시간제 자영업자
- 5) 실업자
- 6) 학생
- 7) 가족돌봄
- 8) 장기 질병/장애
- 9) 은퇴
- 10) 기타

- 지난 1년간 활동상태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지난 1년간 활동상태에 변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2개월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개월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개월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1개월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1) 전일제 임금근로자
- 2) 시간제 임금근로자
- 3) 전일제 자영업자
- 4) 시간제 자영업자
- 5) 실업자
- 6) 학생
- 7) 가족돌봄
- 8) 장기 질병/장애
- 9) 은퇴
- 10) 기타

**라.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평소 활동상태 조사**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네 번째 접근방법은 응답자가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의 회상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캐나다의 ‘연간 근로

형태조사(Annual Work Patterns Survey, 1987)’에서는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경험한 일자리들 각각에 대해 시작시기와 근속기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일자리를 얻기 전의 구직기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상자 3-5>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 평소 활동상태 조사항목**

- 1986년에 취업경험은 몇 번입니까?
- 경험한 일자리별 일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
- 경험한 일자리별 일을 시작 하기 전 구직기간

	일자리 1	일자리 2	....
일 시작시기	월일	월일	
그만 둔 시기	월일	월일	
구직기간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평소 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한국고용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통계조사에서는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문항과 순서로 설계되어 있다. 조사기준기간 동안 직장(일) 경험여부 → 직장(일) 경험 횟수 → 경험한 일자리별 일자리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경험한 일자리별 산업분류,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인턴과정 유무, 계약기간 유무 및 계약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자 3-6>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평소 활동상태 조사항목**

-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경험에 대한 응답표입니다. 가졌던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일을 시작한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련번호	경험유무	일 시작 시기		일 종료 시기		업종	한일	종사상 지위	일자리 형태	근무 형태	인턴 과정	계약 기간 여부
		년	월	년	월							
1												
2												
3												



일련번호	계약기간	계약만료후상황	간접고용여부	근로시간형태	종사자수	월평균소득	주당평균근무일수	주당총근무시간	그만둔이유
1									
2									
3									

## 2. 시사점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인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측정과 관련하여 조사기준기간, 주된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기준단위, 주된 활동상태의 결정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가. 조사기준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조사기준기간으로 정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기준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 통계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LO의 제13차 ICLS 결의안(1982)에서의 평소의 개념은 지난 12개월 또는 지난 해이다. 통계조사의 목적에 따라서는 이보다 짧은 6개월이나 기간이 더 긴 24개월과 같은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는 월을 기준으로 조사기준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조사 실시월과 상관없이 지난 해의 1년 동안을 조사기준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조사에서는 조사기준기간이 12개월인 경우 모두 ‘지난 1년간(동안)’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년 동안을 조사기준으로 하는 조사항목은 장기실업자를 측정하기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구직활동 경험 유무와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 지난 1년간 교육·훈련경험 유무, 지난 1년간 연금수령 유무와 월평균 수령액 등이 있다. 조사기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조사실시월을 기준으로 조사기준기간을 정하면 기존 조사문항과의 개념상 일관성 및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를 나누는 기준인 1년 이상 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주된 활동상태 결정의 기준단위

국제노동기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나누는 기준은 주수 또는 일수이다. 지난 1년간의 활동상태별로 주수나 일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네 가지 측정방법 중에서 주수나 일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조사방법인 연간 활동상태에 대한 주수와 일수를 조사하는 방법과 네 번째 조사방법인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평소 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통계조사상의 편의를 위해 주수나 일수 대신에 월수를 측정단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주된 활동상태의 결정

평소 활동인구를 측정하는 측정방법 중 두 번째와 네 번째 측정방법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조사현장에서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네 번째 측정방법은 경험한 일자리별 및 구직경험별로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에 대한 조사항목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년층 부가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조사항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일자리 시작시기와 이직시기 조사항목은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조사하기 힘든 조사문항이란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시작시기와 이직시기를 월별로 조사하는 것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월별로 측정 한다면, 각월의 활동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각월에서 2주 이상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로, 2주 미만인 경우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가조사에서도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각월의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각 월의 활동상태가 정해지면,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경제활동인구와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평소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취업자와 평소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제4절 조사항목 개발

### 1. 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목적은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시장과 주변영역 간 이행을 측정함으로써,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별로 좋은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난 1년간의 ‘각월별’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하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존 조사에서 조사기준기간이 12개월인 경우 모두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난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일자리 시작시기와 미취업자에 대해 조사하는 취업경험 문항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한다면, 조사대상은 취업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사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일자리 시작시기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걸러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filter question)이 필요하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와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의 경우 활동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조사항목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 관련 항목과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문항만 조사하면 된다.

#### <상자 3-7>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조사대상 걸러내기 조사항목

26.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 미만 → 이직시기:     년  월

2. 1년 이상

3. 없었음

31.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201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본조사의 표본 35,037천명 중에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22,544천명(64.3%)이다. 조사대상 22,544천명 중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만 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자는 취업경험이 없는 13,252천명(58.8%)이다.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하는 모든 조사항목을 조사하는 조사대상자는 취업경험이 있는 9,292천명(41.2%)이다.

〈표 3-2〉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규모(비임금근로자 제외)

(단위: 명, 천명, %)

	표본규모 (가중값 미적용)	표본규모 (가중값 적용)	조사항목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임금근로자	17,764	12,493(35.7)	-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8,347	5,895(16.8)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	709	563(1.6)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271	234(0.7)	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	4,217	2,834(8.1)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	20,422	13,018(37.2)	실업/비경
총 계	51,730	35,0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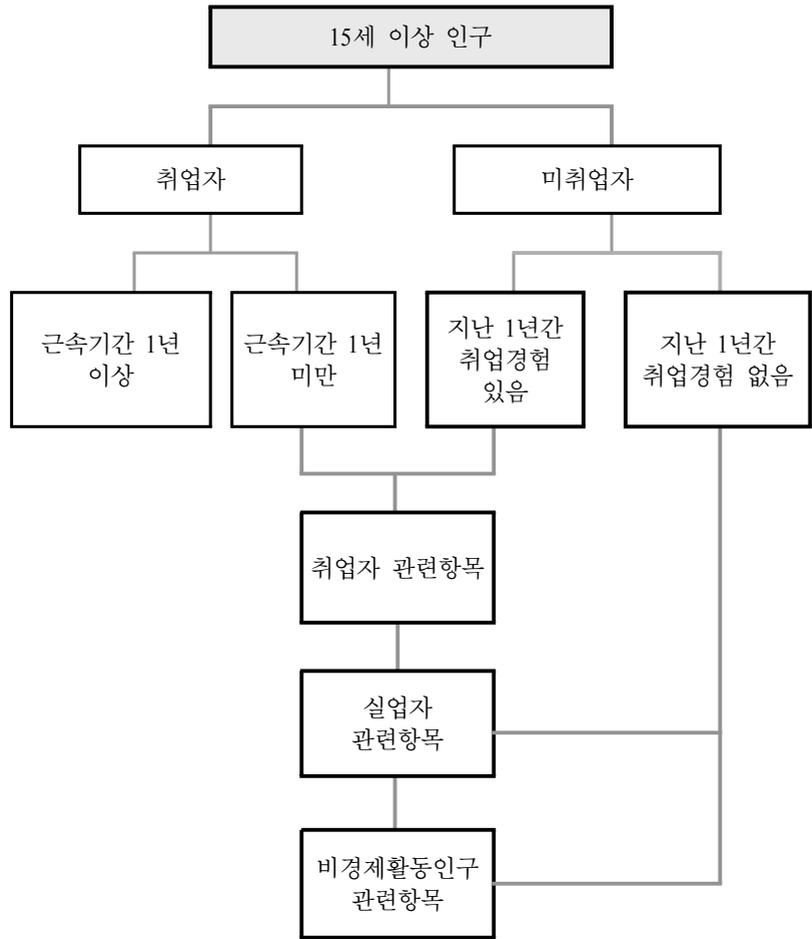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현재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 지역고용조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지역별고용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44.6%이다.

〈표 3-3〉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규모(비임금근로자 포함)

(단위: 천명, %)

	표본규모 (가중값 적용)	조사항목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임금근로자	12,728(30.3)	-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5,417(12.9)	취업/실업/비경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비임금근로자	6,341(15.1)	-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비임금근로자	617(1.5)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	478(1.1)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348(0.8)	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	1,882(4.5)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	14,191(33.8)	실업/비경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흐름도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흐름도

## 2. 조사항목 설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 조사항목과 추가 조사항목으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한다. 기본 조사항목은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월별로 취업상태, 실업상태,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월별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근로연령인구의 연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추가 조사항목은 정부 고용정책의 주된 정책대상인 여성과 청년층의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조사시점을 2015년 5월로 가정하고 조사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조사시점이 2015년 5월이므로, 조사기준기간은 2014년 5월~2015년 4월이다.

## 가. 기본 조사항목

### 1) 취업자 관련 조사항목: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

① (비임금근로자)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일자리 시작시기가 2014년 5월 이전) 질문 끝)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 지난 1년간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제외하고 모두 몇 번 취업하였습니까?

1. 없음(☞ 실업자 관련 문항으로)
2. 한 번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이상

③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 지난 1년간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제외하고, 경험한 일자리(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③-1. 일자리 1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③-2. 일자리 2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③-3. 일자리 3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③-4. 일자리 4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 2) 취업자 관련 조사항목: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① (취업경험이 1년 미만인 미취업자) 지난 1년 간 26번에서 응답한 취업경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번 취업하였습니까?

1. 한 번
2. 두 번
3. 세 번
4. 네 번 이상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미취업자)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자리(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②-1. 일자리 1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②-2. 일자리 2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②-3. 일자리 3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②-4. 일자리 4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 3) 실업자 관련 조사항목

① 지난 1년 동안 미취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7번으로)

② 지난 1년간 미취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③ 구직활동을 한 월 중에서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 4)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조사항목

① 지난 1년간 미취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한 월은 언제입니까?

1. 없었음
2. 있었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 나. 추가 조사항목

##### 1) 청년층의 교육·훈련에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조사항목

①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없었음(☞ 질문 끝)
2. 있음

② 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곳은 어디이고, 받은 월은 언제입니까?

1. 정규 교육기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2. 비정규 교육기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3. 정규 직업훈련기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4. 비정규 직업훈련기관(학원 등)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	----	----	----	-----	-----	-----	----	----	----	----

## 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장애요인

① 지난 1년간 미취업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규 교육기관 통학
2. 비정규 교육기관 통학
3. 정규 직업훈련기관 통학
4. 비정규 직업훈련기관(학원 등) 통학
5. 결혼
6. 임신·출산
7.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8. 가족돌봄
9. 기타



## 제5절 연구결과와 결론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주제의 선정과 조사 항목 개발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을 위해서는 고용통계 측정틀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해외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규 통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수요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잠정적으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에 대한 측정방법인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의 네 가지 접근방법과 관련 조사의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 조사항목과 추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기본 조사항목은 근로연령인구의 지난 1년간의 월별 활동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조사항목은 정부가 고용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지난 1주와 4주와 같은 단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대해서 주로 측정하였다. 지난 1년과 같은 장기 조사기준기간에 대한 고용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고용동향과 고용구조에 대한 교차분석이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근로연령인구의 월별 활동상태 간의 이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의 질을 높이고, 관련 문헌의 양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청년층과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항목의 개발을 통해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이행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경순·윤도현(2010),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행노동시장',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pp. 207-230.
- 옥우석(2010), 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측정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용역사업
- 장하준(2014),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김희정 역, 부키
- 정병석·박능후·김동현 편저(2011), TLM과 고용서비스 포럼 종합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한국고용정보원
- 정원호·나영선·류기락·박경순(2011), 이행노동시장 연구: 이론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승훈(2013),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UN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 Aurer, P.(2007), Security in labour markets: Combining flexibility with security for decent work, Geneva, ILO.
- Brzinsky-Fay, C.(2010), The concept for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ventory.
- Chernyshev, I.(2011), Linkages between the Decent Work and Quality of Employment frameworks, UNECE/ILO/EUROSTAT and Statistics Canada Meeting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31 October - 2 November 2011, Geneva.
- De Gier, E., Van den Berg, A.(2005), Managing social risks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 Towards an enriched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msterdam, HET SPINHUIS.
-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neither in employment nor education and training(NEET) Presentation of data for the 27 Member States, EMCO Contribution.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 Four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European Parliament(2009), Indicators of job 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 Eurostat(2008),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in Europe, Edited by Anthony B. and Eric Marlier, Luxembourg.
- Eurostat(2011), EU-SILC Personal data Questionnaire.
- Gallup Europe(2010), 5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0 Technical Report, Working document for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Husmanns, R., Measurement of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ssues in their application
- Husmanns, R.; Mehran, F.; Verma, V. 1990.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Geneva, ILO.
- ILO(2013),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ILO Manual Second version, September 2013, Geneva, ILO.
- ILO(2008), Measurement of decent work, Discussion paper for the Tripartite Meeting of Experts on the Measurement of Decent Work, TMEMEW/2008, 8-10 September 2008, Geneva, ILO.
- ILO(2008), Report of the Conferenc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24 November-5 December 2008, Geneva, ILO.
- ILO(198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dopted by the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1998),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 adopted by the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LO(2008),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
- ILO(2013), Resultu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 Muffels, R.J.A.(2005), Labour market mobility and employment patterns: Researching Labour Market Transitions in European Welfare Regimes, Position Paper Workpackage 3, tlm.net, Working Paper.
- OECD(2006), Starting well or losing their way? The position of Youth in the Labour Market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 OECD(2007), Jobs for Youth: Korea, Paris, OECD.
- OECD(2008), Employment Outlook: Off to a Good Start? Youth Labour Market Transition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 OECD(2009), Youth Employment, Paris, OECD.
- OECD(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Paris, OECD.
- UNECE(2012), Statistical framework for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Draft revised after the Expert Group meeting on 22-23 November 2012, Expert Group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 UNECE(2013), Draft indicator definition sheets, dimensions 1 to 4, Statistical Framework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Expert Group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 Saint-Martin, A.(2013), Employment quality in the OECD Better Life Initiative, Meeting of the Group of Expert on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11-13 September 2013, Geneva.
- Sengenberger, W.(2011), Beyond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The case for extending and amending labour market statistics, Geneva, ILO, 2011.
-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Strategy, Discussion Paper, ISSN Nr. 1011-9523, WZB.

- Schmid, G., Gazier, B.(2002),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 - 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WZB,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Schmid, G.(2009), Transitional Labour Markets, from theory to policy application,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nd Flexicurity: Managing Social Risks over the Lifecourse, Document de Travail du Centre d'Economie de la Sorbonne - 2009.75.
- Stiglitz, J. E., Sen, A., Fitoussi J-P.(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Reci, I., Bruini, J.(2006), Transitional Labour Markets - Past, Present and Future Applications, tlm.net, Managing Social Risks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Working paper.
- Van der Valk, J.(2011), Quality of employment in the EU, Meeting Quality of Employment, Geneva.
- Vermeulen G.(2013), Job 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reflections from secondary analyses of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urofound Quality of Employment, UNECE/ILO/Eurostat meeting, Geneva, 11-13 Sept.

- 보도자료 -

- 관계부처 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관계부처 합동(20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담화문 설명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 기획재정부(201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 참고 사이트 -

- [www.census.gov/cps/](http://www.census.gov/cps/)
- [www.bls.gov/cps/](http://www.bls.gov/cps/)
- [www.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EU\\_labour\\_force\\_survey\\_ad\\_hoc\\_modules](http://www.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EU_labour_force_survey_ad_hoc_modules)
-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_social\\_inclusion\\_living\\_conditions/quality/questionnaire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incom_social_inclusion_living_conditions/quality/questionnaires)
- [www.siswo.uva.nl/tlm/](http://www.siswo.uva.nl/tlm/)

- 조사표 -

-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조사표.
- 지역별고용조사 조사표.
- 한국노동패널 1-15차 통합설문지.
-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년도 설문지(2012).
- Eurostat EU-SILC Questionnaire.